

18.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제안일자 : 2021년 3월 5일
- 제안자 : 하병문, 김원규, 김지만, 박갑상, 윤기배, 이만규, 이태손, 황순자 의원
- 회부일자 : 2021년 3월 9일
- 상정일자
 - 대구광역시의회 제281회 임시회
 -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(2021년 3월 22일) : 원안 가결

2. 제안설명 요지 (제안설명자 : 하병문 의원)

□ 제안이유

- 아파트의 단지 내 도로, 주차장 등에서의 교통사고 증가, 어린이, 노인, 장애인 등의 각종 안전사고 등 약자에 대한 안전대책이 절실하나, 사유지인 공동주택 단지의 공용시설에 대한 공공의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.
- 따라서, 교통안전시설 등 각종 사고 예방시설에 대한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이 가능하도록 공동주택 관리 제도를 개선하여,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에 기여하고자 함.

□ 주요내용

- 공동주택의 도로, 주차장 등 단지 내에 교통안전시설의 설치와 유지관리에 대한 사항, 장애인 편의시설 및 안전시설의 설치 및 유지·보수에 대한 사항 등을 조례로 정하는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에 포함시켜, 교통사고를 비롯한 각종 안전사고 방지 및 생활환경의 개선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. (안 제22조)

3. 검토보고 요지 (보고자 : 전문위원 박진성)

- 본 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단지내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법에 의거 공용시설에 대한 관리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
- 주민의 안전한 생활과 밀접한 교통안전시설 및 장애인 편의·안전시설을 설치, 유지·보수할 수 있게 관리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공동주택 단지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 및 사고를 사전 예방하고, 장애인에게는 편의와 안전을 제공할 것으로는 기대됨.
- 다만,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결정시 구·군의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실태, 대구시 재정 및 일반주택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할 것임.

4. 질의 및 답변 요지

질	의	답	변
○ 일반주택과의 형평성, 공동주택간 형평성 문제와 사적 영역에 공적예산 투입의 한계점이 우려됨		○ 공동주택은 사적영역이며,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대다수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.	

5. 토론요지

- 없음

6. 수정안 요지

- 없음

7. 심사결과

- 원안 가결(재석위원 전원 찬성)

8. 소수의견 요지

- 없음

9. 기타 필요한 사항

- 없음